

21. 아르헨티나(Argentina)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적용대상	근로자, 자영자	근로자, 자영자	-
보험료율(가입자/사용자)	23.71% (11% / 12.71%)	23.53% (11% / 12.53%)	사용자 부담분은 업종에 따라 상이 (10.47~12.53%)
보험료 부과 상한 / 하한 소득	72,289.62 / 2,224.32 pesos	130,321 / 4,009.94 pesos	-
연금수급 개시 연령	65세	65세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30년	30년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04년~1954년(특정 부류를 위한 다양한 법)
- **현행법** : 1971년(노령 및 장애연금), 1993(사적 부문 근로자 및 자영자), 1998(저소득자를 위한 납부 간소화), 2004년(조기퇴직, 2005년 시행), 2008년(연금 조정, 2009년 시행), 2016년(기초노령연금)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 ※ 1994년부터 2008년 말까지 혼합된 제도 존재(1층 공적 부과방식 제도와 2층 개인계좌와 제도로 구성). 2008년 법에 따라 2층의 개인계좌제도는 종료되고 모든 근로자 및 그들의 계좌 잔액은 새로운 1층의 부과방식제도(통합 아르헨티나 연금제도, SIPA)로 전환되었음

3 적용대상

- **사회보험**
 - **당연적용** : 근로자 및 자영자
 - **임의적용** : 성직자, 기업임원, 협동조합 명예회원, 가정주부, 특정 부류에 속한 대상
 - **적용제외** : 해외에서 고용되어 아르헨티나에서 2년까지 근로하고 외국제도에 가입한 특정 전문직 근로자(연구원, 과학자, 기술자 등)
 - **특별제도** : 군인, 보안인력, 경찰, 대학교수, 교사, 외교관, 과학분야 연구원, 사법기관, 가사근로자, 에너지 부문 근로자

- 사회부조 : 아르헨티나 빈곤층 거주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월 가입소득의 11%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 : 4,009.94 pesos(2019년 6월 기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소득 : 130,321 pesos(2019년 6월 기준)
 - 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한 보험료는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납부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5개의 소득범주(6,683.15 pesos~29,405.82 pesos)에 따라 월 참조소득의 27%
 - 소액 납부자를 위한 간소화된 제도에 등록된 자영자는 신고 소득에 따라 493.31 pesos에서 1,279.52 pesos까지 매월 납부
 - 연 소득이 138,127.99 pesos 미만인 소액 납부자는 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소액 납부자는 이동 가능한 제품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동자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법률로 규정된 3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함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기업 종류에 따라 임금지급총액의 10.47%~12.53%, 공공부문 사용자는 16%
 -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월 하한소득 : 4,009.94 pesos
 - 보험료 부과대상 월 최고소득 없음
 - 보험료는 매월 납부. 매년 13번째 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납부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사회보험 : 일반 조세, 투자수익, 사회보험연금기금을 위한 목적세를 통해 납부
- 사회부조 : 총 비용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30년 이상인 65세(여자 60세~65세)도달자(가입자는 미납기간 1년을 퇴직 연령 이후 2년의 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고위험 또는 비위생 직종 종사자의 경우 퇴직연령과 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이 최대 10년으로 완화됨
- 고령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퇴직 전 최종 8년 중 5년 이상을 포함)인 70세 도달자여야 하며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아야 함. 자영자는 5년 이상 가입했어야 함
 - 고령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해외 지급 가능
- 노령사회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65세 도달자이면서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귀화자는 연금청구 직전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 외국인은 연금청구 직전 10년 포함하여 2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
 - 자산조사 : 수급권자의 최근 12개월 간 총 수입이 645,948 pesos 미만이어야 함; 자산가치는 제한금액의 4배(2,583,792 pesos) 미만이어야 함; 최근 12개월 간 총 지출 비용은 제한금액 30% (839,732.40 pesos) 미만이어야 함
 - 해외송금 불가
- 비기여 노령연금(사회부조)
 - 70세에 도달하고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적 또는 영양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귀화자의 경우 연금청구 직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4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
 - 자산조사 :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자산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사회연금 또는 사회부조 노령연금/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 해외송금 불가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근로능력을 66% 이상 상실한 정상퇴직연령 미만인 자여야 하며 정기 또는 비정기 보험료 납부자였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급여를 수급하지 않아야 함
 - 정기 납부자는 노령연금(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거나 장애 발생 전 최종 36개월 중 3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비정기 납부자는 장애 발생 전 최종 36개월 중 18개월의 납부기간이 있거나 노령연금(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의 50%를 충족하고 장애발생 전 최종 60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의료 위원회가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평가
- 장애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
- 고령장애연금(사회보험)
 - 근로능력을 66% 이상 상실하였다고 판정된 65세 이상인 자여야 함.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보험료 납부자였어야 하며, 다른 급여를 수급하지 않아야 함
 - 정기 납부자는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위한 납부요건을 충족하거나 장애발생 전 36개월 중 30개월의 납부기간이 있어야 함
 - 비정기 납부자는 장애 발생 전 최종 36개월 중 18개월 이상 납부기간이 있거나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고 장애 발생 전 최종 60개월 중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
 - 고령장애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
- 비기여 장애연금(사회부조)
 - 연령이 정년 미만이며 근로능력이 76% 이상 상실하였다고 판정받았으며 다른 급여 및 가족으로부터의 재정적, 영양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귀화자의 경우 연금청구 직전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2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
 - 소득조사 : 수급권자의 수입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사회보험(혹은 사회부조)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비기여 장애연금은 정년 도달 시 중지되며 노령사회연금으로 대체됨
 - 공공건강관리기관의 의사가 근로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함
 - 비기여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불가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사망자와 5년(자녀가 있을 경우 2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 급여를 받지 않는 18세 미만 미혼자녀, 급여를 받지 않는 18세 미만 미망인 딸, 사망자의 장애가 있는 피부양자녀(연령제한 없음)
 - 유족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해외지급 가능
- 비기여 유족연금(사회부조)
 - 사망자가 사망 당시 비기여 노령연금 또는 비기여 부모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경우 지급
 - 사망자가 비기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경우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대상은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한 70세 이상(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의 피부양 배우자 또는 동거인임. 사망자가 비기여 부모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경우,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 대상은 피부양 장애인 배우자 또는 남성 동거인, 18세 미만의 자녀임(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비기여 유족연금은 노령사회연금, 아동급여, 기본가족수당, 기본아동수당, 기본모성급여와 합산될 수 없음
- 장제비(사회보험)
 -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었거나 수급권이 있었고 신청했으나 수급하지 못한 가입자의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지급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급여액은 다음 세 가지의 급여를 합산한 총액; 기초정액노령연금, 1994년 7월 이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보상연금, 1994년 7월 이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부가연금
 - 1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해로 봄
 - 기초노령연금 : 월 3,619.07 pesos 지급 (2018년 3월)
 - 보상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부가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조정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기초노령연금, 보상연금, 부가연금을 합산한 월 최저 노령연금은 11,528.44 pesos(2019년 6월 기준)
 - 기초노령연금, 보상연금, 부가연금을 합산한 월 최대 노령연금은 84,459.47 pesos(2019년 6월 기준)
 - 지급시기 : 연금은 매월 지급, 정기 월 연금액에 상응하는 13번째 연금은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70%비중)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국가평균임금 변동(30%비중)에 기초하여 3, 6, 9, 12월에 조정
- 고령노령연금(사회보험)
 - 급여액은 다음 세 가지의 급여를 합산한 총액; 기초정액노령연금, 1994년 7월 이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보상연금, 1994년 7월 이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부가연금
 - 1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해로 봄
 - 기초연금 : 월 3,619.07 pesos 의 70%를 지급 (2018년 3월 기준)
 - 보상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부가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조정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지급시기 : 연금은 매월 지급, 정기 월 연금액에 상응하는 13번째 연금은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70%비중)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국가평균임금 변동(30%비중)에 기초하여 3,6,9,12월에 조정
- 노령사회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월 최저 노령연금(11,528.44 pesos)의 80%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금액은 최저노령연금액이 조정될 때 조정됨
- 비기여 노령연금(사회부조, 소득조사)

- 월 최저 노령연금(11,528.44 pesos)의 70% 지급
- 연금액 조정 : 연금액은 최저노령연금액이 조정될 때 조정됨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청구 전 최종 5년 간 가입자 평균수입의 70%(정기 납부자) 또는 50%(비정기 납부자) 지급
 - 월 최저 장애연금 : 11,528.44 pesos(2019년 6월 기준)
 - 월 최대 장애연금 : 84,459.47 pesos(2019년 6월 기준)
 -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연금은 매월 지급, 정기 월 연금액에 상응하는 13번째 연금은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70%비중)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국가평균임금 변동(30%비중)에 기초하여 3,6,9,12월에 조정
- 고령장애연금(사회보험)
 - 급여액은 다음 세 가지의 급여를 합산한 총액; 기초정액노령연금, 1994년 7월 이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보상연금, 1994년 7월 이후의 납부 및 가입연수에 따른 부가연금
 - 1년의 가입기간은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해로 봄
 - 기초연금 : 월 3,619.07 pesos 의 70%를 지급 (2018년 3월 기준)
 - 보상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가입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부가연금 : 최근 10년간 가입자 월 평균조정소득의 1.5%(자영자는 가입기간 전체의 가중 평균금액)에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된 납부연수(최대 35년)를 곱하여 산정
 - 지급시기 : 연금은 매월 지급, 정기 월 연금액에 상응하는 13번째 연금은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70%비중)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국가평균임금 변동(30%비중)에 기초하여 3,6,9,12월에 조정
- 비기여 장애연금 (사회부조)
 - 월 최저 장애연금(11,528.44 pesos)의 70% 지급
 - 부가급여는 가족수당제도에 따라 피부양자에게 지급 가능함
 - 연금액 조정 : 연금액은 최저연금액이 조정될 때 조정됨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 연금 : 사망자가 사망 시 근로 중이었던 경우 참조금액의 70%,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을 수급자였던 경우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액의 70%를 자녀가 1명 미만인 배우자에게 지급. 자녀가 2명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90%,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00% 배우자에게 지급
 - 참조금액은 정기납부자는 사망 전 최종 5년간의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70%이며 수급

- 자격이 있는 고아가 있고 비정기 납부자의 경우 50%
- 고아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시 근로 중이었던 경우 참조금액의 20%,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자였던 경우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액의 20%를 수급 가능 자녀 각각에게 지급. 수급가능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없는 경우, 유족연금은 유족 자녀들에게 균분 지급
- 참조금액은 사망 전 최종 5년간의 사망자 월 평균소득의 70%(비정기 납부자의 경우 50%)
- 수급권이 있는 유족 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 금액은 재산정 될 수 있음
- 월 최저 유족연금 : 8,069.91 pesos(2019년 6월 기준)
- 월 최대 유족연금 : 84,459.47 pesos(2019년 6월 기준)
- 지급시기 : 연금은 매월 지급, 정기 월 연금액에 상응하는 13번째 연금은 둘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지급
- 급여조정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70%비중) 및 정규직 근로자의 국가평균임금 변동(30%비중)에 기초하여 3,6,9,12월에 조정
- 비기여 유족연금(사회부조) :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월 균분 지급
- 장제비(사회보험) : 6,000pesos의 일시금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보건사회개발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 <http://www.argentina.gob.ar/desarrollosocial>
- 전반적인 감독

○ 사회보장부처(Secretary of Social Security)

- <http://www.argentina.gob.ar/desarrollosocial/seguridadesocial>
- 보건사회개발부 산하로 정책개발, 실행 및 평가 담당

○ 국가사회보장청(National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http://www.anses.gov.ar>
-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부조제도 관리

○ 국가장애기관(National Agency for Disability)

- <http://www.argentina.gob.ar/andis>
-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장애연금 관리

○ 국가연금위원회(National Assistance Pension Commission)

- <http://www.desarrollosocial.gov.ar>
- 사회부조연금제도 운영

○ 공공연방세입청(Federal Administration of Public Revenue)

- <http://www.afip.gob.ar>
- 보험료 징수 및 소액 납부자 사회보험제도 관리

<2019년 ISSA 자료>